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 697 호 2009. 5. 25 (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의회규칙 제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1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80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1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12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3호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4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4호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5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7호 공시송달공고	7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9호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7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30호 신조 공인 공고	8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3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8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38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9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강 성 구

2009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9 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9-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9. 5.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	165	대로1-19 공촌동 산86-5	소로3-1 공촌동 산88-1	일반 도로	2005. 4. 4	공촌
변경	소로	3	3	6	국지	165	대로1-19 공촌동 산86-5	소로3-1 공촌동 산88-1	일반 도로		도로선 형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131	소로3-1 공촌동 산29-3	소로3-3 공촌동 산86-1	일반 도로	2005. 4. 4	공촌
변경	소로	3	4	6	국지	131	소로3-1 공촌동 산29-3	소로3-3 공촌동 산86-1	일반 도로		도로선 형변경

○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선형 일부변경 • 폭원,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점부분에 대한 일부 도로 선형조정 	
소로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선형 일부변경 • 폭원,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점부분에 대한 일부 도로 선형조정 	

2. 지형도면 : 따로붙임(계재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1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80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2류180호선, 사업명:석남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72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2류180호선)
 - 【명칭】 석남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151.0m, B = 9.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5월 ~ 200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009년 5월

지 장 물 조 서

【공사 명: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 장 물 조 서

● 사 업 명 : 석남중학교진입로 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총면적 (㎡)	편입적 (㎡)	실제 이용 현황	토지 소유자		물건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①	석남동 327-2	EGI 담장	파이프기둥담장 H= 2.25m L= 13.2m	29.70	29.7	담장	국 (국토해양부)	인천, 연수구 연수동576 태산@ 105동504호	김근석 016-773-1300			
②	석남동 327-2	EGI 담장	파이프기둥담장 H= 1.9m L= 5.30m	10.07	10.07	담장						
③	석남동 327-2	탈의실	파이프기둥함석지붕	4.56	0.72	탈의실						
④	석남동 327-2	고물상 작업실	파이프기둥함석지붕	50.32	2.22	고물상 작업실						
⑤	석남동 327-8	가로수	은행나무		1 주	가로수	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서구청			
⑥	석남동 327-8	교통표지 기둥	철재기둥		1 본	교통표 지기둥	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서구청			
⑦	석남동 327-8	체신전주	체신전주		1 주	체신 전주	국 (국토해양부)		정보통신부			
⑧	석남동329-16	체신전주	체신전주		1 본	체신 전주	중구 인현동 1	윤동일	정보통신부			
⑨	석남동 417-10	가로수	감 나무		1 주	가로수	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서구청			
□	석남동 산20-4	가로수	감 나무		1 주	가로수	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서구청			
□	석남동 산20-4	가로등	가로등		1 본	가로등	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서구청			

2009년 5월

용 지 조 서

【공사 명: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용 지 조 서

▣ 공사 명 : 석남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번호	토 지 소 재			현실적 이용상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공부 상 면 적	도로면입 면 적	도시계획선 부지 외	성 명	주 소	
①	석남동	327-1	전	도로	156	156	0	윤 동 일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	
②	석남동	327-2	도	도로	330	330	0	국(국토해양부)		
③	석남동	327-12	전	도로	1	1	0	정 달 분	인천, 서구 석남동 575-29 유진연립 다동 103호	
								최 윤 정	인천, 서구 석남동 575-29 유진연립 다동 103호	
								최 정 자	인천, 남구 용현동 81-11 다가구주택 4층	
								최 정 섭	인천, 서구 석남동 575-29 유진연립 다동 103호	
								최 정 철	인천, 남구 주안동 595-4번지	
④	석남동	328-7	전	도로	2	2	0	조 명 숙	경기도 화성시 반월면 대야미리 369번지	
⑤	석남동	329-8	임	공지	74	74	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감)		
⑥	석남동	329-16	전	도로	464	464	0	윤 동 일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	
⑦	석남동	417-4	도	도로	423	(ㄱ) 343 (ㄴ) 80		국(국토해양부)		
계					1,450	1,370	8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1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09.05.18~05.29(12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원당엘지, 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08.12.1~31. 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 단독신청(1명)

건물명칭	동	호	신청자	비고
원당엘지	104	503	김민식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통장·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상한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개정 사항을 수용하여 우리구 임용사항에 반영하고, 지방 연구, 지도 직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및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
(안 제8조, 별표 1의2 삭제)
-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학력제한 폐지(규칙 제9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삭제)
- 다. ‘민원처리 우수자’ 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제3호)

라. 평점가점 자격증을 예시적으로 규정(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상한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개정 사항을 수용하여 우리구 임용사항에 반영하고, 지방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및 일부 미비점 개선
주 요 내 용	○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 - 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안제8조, 별표 1의2 삭제)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학력 제한 폐지 - 규칙제9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 삭제 ○ ‘민원처리 우수자’ 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민원처리 우수자’ 추가(안제25조제3호) ○ 평점가점 자격증을 예시적으로 규정 - 안제25조의2 신설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 본문 중 “영”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제1호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호 중 “연구 및 지도직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7의2]”로 하고, “[별표 5]의 비율”을 “[별표 7의2]의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7의4]”로, “[별표 7]”을 “[별표 4]”로, “[별표8]”을 “[별표 7의3]”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있는”을 “있는 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6조 중 “연구 및 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하고,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0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영 제29조제6호”를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제11조 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조의2제2항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으로 하며,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1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

칙」” 으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사무처리규칙” 을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9조 및 제14조제5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9조 및 제14조제5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생 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2항과 제17조제2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제도,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산	업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	명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	촌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 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설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비, 인간 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명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 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 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 (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 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장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	축	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	촌	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	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	업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나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나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 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 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 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 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 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 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 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 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 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 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 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 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 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 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 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 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 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 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 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 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 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 (섬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업 (화학) (가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업 (자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향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향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 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 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 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장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 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 계산기)
통 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 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 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 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 통신)
통 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 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 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 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 연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발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업 연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업 연구 (잠업근총)	기술사(생사)
농업 연구 (축 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p> <p>수의사</p>
농업 연구 (농 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녹지 연구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해양 수산 연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건 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 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 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 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 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 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 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생 활 지 도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라 특별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
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
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직렬	구분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p>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p>
건축		<p>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건축사</p>	<p>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p>
통신		<p>기술사(정보통신)</p> <p>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p> <p>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p>	<p>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p>
전기		<p>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p>기능장(전기공사, 전자기기)</p>	<p>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p>
기계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p> <p>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p>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 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 박, 선 박 기 관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 림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비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경우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p>
<p>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략)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1. ~ 3. (생략)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p>

현행	개정안
<p>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p>	<p>----- ----- -----.</p>
<p>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제8조(응시연령) ① ----- ----- ----- 다음 각 호 ----- ----- . <단서 삭제></p> <p>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p>
<p>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p>	<p>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 ----- ----- . ----- ----- -----.</p>

현행	개정안
<p>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p> <p>⑤영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⑥영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p> <p>⑦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생략) ⑨ (생략) 	<p>----- ----- -----.</p> <p>⑤영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⑥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p> <p>⑦영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①영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p>② (생략)</p>	<p>제15조의2(특수한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①영제17조제1항제6호의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 및 영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 및 영제17조제1항제11호----- ----- ----- -----.</p>
<p>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생략)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6]에 의한다.</p>	<p>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 ----- -----.</p>

현 행	개 정 안
<p>③영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p>	<p>③영제29조제5호----- ----- ----- ----- -----.</p>
<p>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u>지 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u>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 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p>	<p>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의 등록) ① ----- ----- ----- ----- 「지방공 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 칙」----- -----. 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u>지 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사무처리규칙</u>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 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 ----- -----. -----.</p>

현행	개정안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u>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u>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 -----<u>연구 및 지도직 규정</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u>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u>
<p><신설></p>	<p>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p>
<p>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u>연구 및 지도직규정</u>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p>	<p>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 <u>연구 및 지도직 규정</u> ----- ----- -----.</p>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623호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55,364㎡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주민의견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내용]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9-624호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0,450m²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석남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주민의견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횡령·유용 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된 ‘강등’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사건, 성폭력범죄 행위를 엄중 문책 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2항)
- 나. 횡령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 1])의 징계기준
- 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별표 1의2]) 신설

라.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 및 ‘정직’ 사이에 반영하는 등 비리유형 세분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횡령·유용 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된 ‘강등’의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중문책 대상에 음주운전사건, 성폭력범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사건, 성폭력범죄 행위를 엄중문책 대상에 추가(안제2조2항) ○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으로 단순한 비리 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으로 세분화 - 세분화된 비리 유형에 따라 징계양정기준 별도 신설 ([별표 1]의 징계기준) ○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 조치 ([별표 1의2] 신설) ○ 비위유형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를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 및 정직’ 사이에 반영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3])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해 당 없 음”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

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3년” 을 “5년” 으로, “중점정화대상 비위” 를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이상” 을 “둘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동조동항”을 “같은 조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을 “감경”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과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과면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u>」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u>」 제8조 제----- <u>지방공무원</u>----- ----- ----- ----- -----.</p>
<p>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u>개전의 정</u>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p>	<p>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u>뇌우치는 정도</u>,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u>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u></p>
<p>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p>	<p>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p>

현 행	개 정 안
<p>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u>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u></p> <p>③<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강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u>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u></p> <p>③<u>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2. <u>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u>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582 851 742 896"><신 설></p>	<p data-bbox="885 313 1428 828">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 data-bbox="805 851 1428 1299">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data-bbox="845 1321 1428 1971"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현 행	개 정 안
<p>여야 하며, <u>동조동항</u>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p>	<p>-----, <u>같은 조 같은 항</u>----- ----- -----.</p>
<p>②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u>감정의결</u>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 ----- ----- -----<u>감경</u>----- -----.</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문희영 외140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내역 참조
-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 공 고 기 간 : 2009. 5. 21 ~ 2009. 6. 4(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이유로 재차 반송이 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09년 6월 4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7)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대체압류포함)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7, FAX032-560-48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

[단위:원]

연번	납부자성명	체납금액	주 소	비고
1	문희영	340,200	인천광역시서구 가좌동3 30 번지 2호 14통 3반 진주아파트 3동 812호	수취인불명
2	윤상목	300,000	인천광역시서구 금곡동 산 163 번지 18통 1반	수취인불명
3	조명순	1,368,000	인천광역시서구 석남동 517 번지 22통 4반 상상빌리지 케이오피 4동 603호	폐문부재
4	박진곤	300,000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184 번지 9호 26통 3반 신성빌리지 가동 301호	수취인불명
5	김철문	1,195,000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341 번지 15호 30통 4반 하나아파트 102동 404호	폐문부재
6	장대성	790,000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524 번지 25호 49통 3반 화신빌라 나동 302호	폐문부재
7	권성근	1,523,78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2 번지 11호 20통 4반 신동아연립 가동 306호	폐문부재
8	양춘승	1,264,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33 번지 16호 10통 3반	폐문부재
9	정종균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212번지 22호 라이프빌라 8동 102호 29통 4반	수취인불명
10	김대복	339,5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7 번지 28호 28통 3반 청송빌라 나동 302호	폐문부재
11	권종두	1,4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892번지 하나아파트 104동 503호 39통 4반	폐문부재
12	변인수	1,342,8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9 번지 3호 7통 1반 현대빌라 ,35 B동 302호	폐문부재
13	박용식	300,000	서울특별시 종랑구 중화동148번지 139호 16통 4반	폐문부재
14	심재득	1,353,6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107번지 11호 태영빌라 4동 B01호 29통 5반	수취인불명
15	이춘기	1,043,86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2-5 22통3반	수취인불명
16	박성욱	309,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289번지 16호 10통 4반	수취인부재
17	장종덕	104,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281번지 32호 4통 1반	수취인부재
18	조미영	293,000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501번지 10호 3층 8통 3반	폐문부재
19	이종화	64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301번지 2호 미도빌라 9동 303호 2통 1반	폐문부재
20	김성수	2,720,9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7-2 501호 6통11반	폐문부재
21	김방연	2,564,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39번지 14호 미주오피스텔 미주오피스텔상가 101호 44통 2반	수취인불명
22	최명운	56,7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223번지 383호 8통 3반	이사불명
23	노흥조	92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546번지 한신그랜드힐빌리지 17동 505호 25통 5반	폐문부재
24	공재운	1,244,8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80번지 로얄아파트 3동 202호 7통 3반	수취인불명
25	손웅열	1,397,44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15호 501호 2통 1반	폐문부재
26	이건우	6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6번지 2호 덕영맨션 나동 306호 23통 2반	폐문부재
27	유성근	878,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번지 86호 문성하이츠타운 12동 405호 4통 3반	폐문부재
28	김동운	662,64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8번지 12호 덕산아파트 2동 406호 2통 3반	수취인불명
29	박승필	463,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번지 14호 청실빌라 1동 302호 14통 2반	폐문부재
30	김홍태	1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번지 5호 대한빌라 1동 302호 13통 2반	폐문부재
31	전석수	942,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7번지 36호 25통 1반	주소불명
32	이문석	2,388,6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302번지 한국아파트 201동 502호 15통 1반	수취인불명
33	이상현	1,031,40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308번지 11호 경도하이츠빌라 C동 402호 19통 4반	폐문부재
34	고인환	121,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1번지 3호 동부맨션 B동 401호 18통 1반	폐문부재
35	전경진	4,497,6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19번지 5호 103호 3통 7반	수취인불명
36	이수희	869,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6번지 42호 충인빌라 가동 101호 33통 1반	폐문부재
37	김인호	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7호 세영하이츠 A동 202호 6통 2반	폐문부재
38	김효철	687,0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413번지 5통	수취인불명
39	박창봉	213,00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7번지 1호 인천아트빌 513호 42통 1반	폐문부재
40	성기순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4번지 10호 신동아빌라 A동 202호 21통 1반	폐문부재
41	이근구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번지 신성빌라 1동 401호 21통 3반	폐무부재

공시송달내역

[단위:원]

연번	납부자성명	체납금액	주 소	비고
42	박경희	174,69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58 번지 2호 17통 4반 은영그린타운 113동 402호	폐문부재
43	최기태	3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0번지 24통 1반 태영아파트 1동 1705호	수취인불명
44	문현석	30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7 번지 6호 51통 1반 진영빌라 402호	기타(보관중) 09-05-15
45	변태성	3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8 번지 10호 9통 4반	수취인불명
46	최영승	909,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 번지 4통 3반 라이프빌라 8동 205호	폐문부재
47	김범승	63,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5 번지 2호 22통 4반 검암4차신명스카이뷰골드 505동 1402호	폐문부재
48	오미교	2,268,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 번지 12호 48통 3반 대신주택 402호	폐문부재
49	엄풍호	9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9번지 20통 5반 담방마을아파트 102동 302호	폐문부재
50	신미경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3 번지 1호 7통 2반 대진아파트 202동 406호	폐문부재
51	김어식	343,8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통 3반 검단아이파크아파트 검단2지구22B1L외10필지 105동 1102호	폐문부재
52	최재우	279,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41 번지 15호 30통 3반 하나아파트 101동 1003호	폐문부재
53	김동진	129,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2 번지 34호 46통 3반 한국빌라 108동 401호	폐문부재
54	황연	1,229,4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3 번지 8호 2통 4반 삼성하우스빌라 13동 301호	폐문부재
55	박종호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 번지 2호 5통 5반 덕산아파트 B동 313호	폐문부재
56	주경중	47,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 번지 46호 23통 3반 현대빌라 가동 B01호	폐문부재
57	허봉양	3,782,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7번지 107호 6통 8반	수취인부재
58	임영태	359,8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6 번지 45호 22통 4반 한양빌라 5동 102호	수취인불명
59	신영남	519,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46번지 51호 8통 2반	폐문부재
60	허명유	45,0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1361번지 1호 37통	수취인불명
61	안영기	2,987,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49 번지 2호 21통 2반 태경주택 1동 402호	폐문부재
62	장윤우	123,6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3 번지 15호 5통 2반 3층호	수취인불명
63	노승록	1,22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31 번지 22호 6통 1반 효성연립 B동 104호	폐문부재
64	하세철	135,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9 번지 13호 23통 3반 청양맨션빌라 102동 302호	폐문부재
65	이민석	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5 번지 14호 14통 1반 반석시티빌리지 303호	폐문부재
66	김재만	185,3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6 번지 40호 29통 3반 영동빌라 8동 402호	폐문부재
67	유승만	669,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 번지 2호 13통 3반 진주아파트 2동 701호	폐문부재
68	신해영	478,0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9번지 28호 18통 4반 서림빌라 B동 B01호	폐문부재
69	박경희	151,0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28 번지 22호 8통 4반 대경월드아파트 904동 302호	폐문부재
70	배기준	1,277,4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90 번지 7호 6통 6반 318호	수취인불명
71	우홍덕	30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791번지 3110호 2통 3반	폐문부재
72	정용섭	57,00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번지 영남탑스빌아파트 114동1102호	폐문부재
73	조영욱	48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9 번지 4호 힐튼빌라 A동 B02호	폐문부재
74	박상구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57번지 3호 26통 2반	수취인불명
75	조철환	936,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5 번지 14호 진명빌라 4동 101호	폐문부재
76	권순필	189,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7 번지 23호 24통 3반 B02호	폐문부재
77	김명식	51,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3 번지 25호 대원빌라 7동 401호	폐문부재
78	노찬호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 81번지 10통 3반	주소불명
79	김선숙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풍림아이원아파트 804동 203호	폐문부재
80	김흥기	1,166,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3 번지 39호 청실빌라 2동 201호	폐문부재
81	조성배	44,64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8 번지 4호 서광주택 1동 102호	폐문부재
82	이명주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08 번지 월드아파트 110동 404호	이사불명

공시송달내역

[단위:원]

연번	납부자성명	체납금액	주 소	비고
83	엄명진	340,20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59블럭 검단1차대주피오레아파트 114동 401호	폐문부재
84	이재빈	315,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89번지1호 1통 2반 B동 201호	폐문부재
85	이신령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5 번지 10호 라이프주택 C동 205호	수취인불명
86	손주형	93,30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지구94블럭1,2롯데 신안실크밸리아파트 503동 1301호	수취인부재
87	김영미	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산 173번지 2호 10통 3반	폐문부재
88	김동환	1,185,60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5 번지 5호 동아연립 4동 202호	폐문부재
89	김상열	209,00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 번지 38호 서보주택 1동 202호	수취인불명
90	이규화	123,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26 번지 9호 연희하이츠빌라 2동 402호	폐문부재
91	송지은	37,19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79 번지 17호 효마을타운 111동 101호	폐문부재
92	오원섭	65,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9 번지 2호 극동아파트 106동 1404호	폐문부재
93	허 성	42,68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7 번지 22호 대송파인빌 213동 402호	폐문부재
94	박선희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24번지 6호 19통 4반	폐문부재
95	장진환	1,26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 번지 공작아파트 가동 517호	폐문부재
96	김재중	1,2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5블럭9롯데 황금캐슬402호	수취인불명
97	정연석	349,44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4 번지 1호 2통 3반 은성빌라 A동 102호	폐문부재
98	엄순희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51블럭 1,2롯데 27동 2반 삼보해피하임 502동 102호	폐문부재
99	김재성	9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291번지 19통	이사불명
100	채상운	1,255,8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8 번지 3호 강원산업타운 C동 402호	폐문부재
101	곽대연	357,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20번지 12호 14통 2반	수취인불명
102	배미진	707,65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5번지 8호 청솔빌라 3동 B01호	수취인불명
103	최명환	961,8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3 번지 37호 청실빌라 다동 301호	폐문부재
104	김성길	2,03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9 번지 12호 드림빌라 2동 302호	폐문부재
105	황필주	76,7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 번지 7호 대영빌라트 3동 B01호	폐문부재
106	박흥영	1,7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9 번지 64호 선경하이츠빌라 2동 403호	폐문부재
107	문인희	6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98 번지30호20통4반201호	폐문부재
108	조영재	41,24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 번지 86호 진주아파트 306동 1406호	폐문부재
109	정태호	970,8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6 번지 48호 삼선빌라 가동 B02호	폐문부재
110	이동관	1,282,8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0 번지 50호 대룡빌라 13동 101호	폐문부재
111	봉오수	560,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02 번지 갑을아파트 102동 114호	수취인부재
112	김진세	1,131,45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8 번지 7호 서해아파트2단지 A동 509호	수취인불명
113	양재문	14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2 번지 8호 우성장환빌라 C동 B03호	폐문부재
114	최주영	1,299,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9 번지 4호 극동아파트 108동 605호	폐문부재
115	김성만	1,094,76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0 번지 27호 대성빌리지 5동 502호	폐문부재
116	윤선미	4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3 번지 1호 대진아파트 202동 603호	폐문부재
117	현세웅	1,200,0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봉명동 2379번지 반딧빌 203호	폐문부재
118	김 민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8 번지 1호 연희점보주택 1동 301호	수취인불명
119	김종국	198,150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삼정동 285 번지 42호 진도빌라 102동 201호	수취인부재
120	김진국	250,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324번지 2호 3통 1반	수취인부재
121	박종학	3,26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148호 6통 3반 2층	수취인불명
122	채수문	141,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78번지 12호 22통 1반	폐문부재
123	박신정	1,581,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60 번지 15호 제이앤피플러스홈 3동 201호	폐문부재

공시송달내역

[단위:원]

연번	납부자성명	체납금액	주 소	비고
124	이석오	347,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8 번지 36호 정석빌라 1동 402호	폐문부재
125	조혜경	3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55 번지 1호 한양아파트 101동 808호	폐문부재
126	김정훈	1,072,5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1 번지 5호 공원빌라 나동 401호	폐문부재
127	문 희	81,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13 번지 9호 준암프라자 103호	폐문부재
128	최종성	363,1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4 번지 영성빌라 C동 103호	폐문부재
129	허관희	9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79 번지 20호 효마을타운 117동 401호	폐문부재
130	엄기수	39,87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7 번지 4호 신용빌라 B동 101호	폐문부재
131	김정숙	57,65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4 번지 18호 대명빌라 2동 303호	폐문부재
132	양병석	3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33 번지 18호 7통1반104호	폐문부재
133	박 현	3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90 번지 3호 신원아파트 101동 301호	폐문부재
134	최병욱	30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번지73호8통2반	폐문부재
135	박지훈	23,521,6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 번지 648호 태광빌라 102호	수취인불명
136	김중섭	9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5 번지 1호 경성빌라 3동 B01호	폐문부재
137	신동식	339,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6번지 3호 26통 2반	폐문부재
138	엄창용	9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182 번지 95호 대주파크빌아파트 102동 1409호	폐문부재
139	전두진	331,2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6 번지 한신그랜드힐빌리지 35동 507호	수취인불명
140	문현우	316,8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1 번지 30호 혜성빌라 101동 301호	수취인불명
141	이종수	1,299,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1 번지 2호 우성연립 B동 203호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29호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5차)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3-4번지 등 68필지
5. 수용재결 대상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3-4번지 단독주택 등 986건
6. 열람기간 : 2009. 5. 22. ~ 2009. 6. 8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902~4)
8. 의견서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560-59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0 0 9 . 5 . 2 2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명단[총 83인]

연번	성명	토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지분	건물지번	건물지분	지장물	건물	토지금액	지장물금액	금액계	영업권
1	강기정	533-4	대	140.9	1/1	533-4	1/1	11603	단독	205,009,500	125,354,510	330,364,010	-
2	강세환	531-14	대	329.7	24.3/329.7	531-14	1/1	72105	경민주택1층 101호	0	81,333,330	81,333,330	-
3	강영근	483-15	도	42.5	1/1	-	-	-	-	21,278,330	0	21,278,330	-
4	강해근	532-33	대	539.6	32.30/539.6	532-33	1/1	32270	경인빌라 가동 3층 301호	0	105,666,660	105,666,660	-
5	고정애	490-10	대	380.2	24.99/380.2	490-10	1/1	32352	명성빌라 가동 1층102호	0	82,000,000	82,000,000	-
6	고형원	485-3	대	168.3	1/1	485-3	1/1	11504	단독	301,425,300	40,061,480	341,486,780	-
7	구병옥	489-1	대	383.2	1/1	489-1	1/1	12313	단독	880,593,600	618,460,180	1,499,053,780	-
8	권옥자	530-31	대	160.9	20.104/160.9	530-31	1/1	31922	신아빌라 A동 1층 101호	0	65,666,660	65,666,660	-
9	김기영	489-23	대	151.4	1/1	489-23	1/1	12328	단독	214,786,130	179,858,860	394,644,990	-
10	김덕순	493-4	대	932.9	없음	493-4	1/1	52404	5층501호	없음	57,333,330	57,333,330	-
11	김도원	488-15	대	188	1/1	488-15	1/1	12310	단독	446,813,330	230,575,200	677,388,530	-
	김도원	488-20	도	38.9	1/1	-	-	-	-	14,658,810	0	14,658,810	-
12	김란숙	484	대	210.1	26.2625/210.1	484	1/1	31436	하나맨션 3층302호	0	114,000,000	114,000,000	-
13	김명순	530-1	대	440.7	27.78/440.7	530-1	1/1	31914	전인빌라 나동 1층101호	0	79,666,660	79,666,660	-
14	김명한	530-4	대	2879.9	15.87/2879.9	530-4	1/1	32085	상아아파트101동 8층810호	0	96,000,000	96,000,000	-
15	김삼임	484	대	210.1	26.2625/210.1	484	1/1	31437	하나맨션 4층401호	0	110,666,660	110,666,660	-
16	김선국	535-25	대	130.2	1/1	535-25	1/1	11720	단독	243,647,600	156,314,420	399,962,020	-
17	김성윤	530-4	대	2879.9	25.25/2879.9	530-4	1/1	32098	상아아파트101동 10층1003호	0	152,666,660	152,666,660	-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명단[총 83인]

연번	성명	토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지분	건물지번	건물지분	지장물	건물	토지금액	지장물금액	금액계	영업권
18	김성재	484-24	대	320.7	32.07/320.7	484-24	1/1	31450	대창빌라 1층102호	0	102,000,000	102,000,000	-
19	김소영	531-10	대	390.3	24.39/390.3	531-10	1/1	52192	청솔빌라 2동 지1층 지층1호	0	82,333,330	82,333,330	-
20	김수월	493-3	대	598.1	26.75/598.1	493-3	1/1	32473	1층106호	0	183,666,660	183,666,660	-
21	김신원	488-20	도	38.9	1/2	-	-	-	-	14,658,810	0	14,658,810	-
22	김재석	531-4	대	3249.4	30.09/3249.4	531-4	1/1	52107	태산아파트 4층 415호	0	96,000,000	96,000,000	-
23	김정남	530-20	대	133.1	1/1	530-20	1/1	11915	단독	158,522,100	136,871,250	295,393,350	-
24	김정수	485-15	대	186.8	1/1	485-15	1/1	11511	단독	449,004,930	224,375,720	673,380,650	-
25	김종태	486-3	대	1076.1	59.78/1076.1	486-3	1/1	31522	은영연립A동 2층201호	0	165,666,660	165,666,660	-
26	김창식	535-43	대	393.5	25.75/393.5	535-43	1/1	31722	세림빌라B동 4층403호	0	81,333,330	81,333,330	-
27	김추옥	533-1	대	2362	33.29/2362	533-1	1/1	31639	삼용아파트 A동 5층 507호	0	93,666,660	93,666,660	-
28	명노열	492	대	1210.7	1/1	492	1/1	12403	단독	2,895,187,260	488,246,050	3,383,433,310	-
29	박경아	535-27	대	116.1	1/1	535-27	1/1	11722	단독	147,834,000	121,805,620	269,639,620	-
30	박경혜	482-2	대	232.4	23.88/232.4	482-2	1/1	31401	삼화하이츠 나동 1층101호	0	95,333,330	95,333,330	-
31	박동식	530-12	대	118.8	1/1	530-12	1/1	11908	단독	150,757,200	126,957,590	277,714,790	-
32	박선화	490-10	대	380.2	22.88/380.2	490-10	1/1	32353	명성빌라 가동 2층201호	0	79,333,330	79,333,330	-
33	박일남	486-15	도	32.7	1/2	-	-	-	-	19,887,050	0	19,887,050	-
34	박춘택	485-8	대	168.3	1/1	485-8	1/1	11506	단독	241,342,200	260,354,940	501,697,140	-
35	박현동	532-2	대	371.6	25.97/371.6	532-2	1/1	32209	경인빌라 3층 303호	0	84,666,660	84,666,660	-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명단[총 83인]

연번	성명	토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지분	건물지번	건물지분	지장물	건물	토지금액	지장물금액	금액계	영업권
36	박흥기	535-14	대	163	1/1	535-14	1/1	11711	단독	199,457,660	139,431,600	338,889,260	-
37	배남섭	532-7	대	163.4	1/1	532-7	1/1	12205	단독	215,796,930	112,966,900	328,763,830	-
38	서성자	534-20	대	208.1	25.6/208.1	534-20	1/1	51607	신정빌라 1층 101호	0	79,000,000	79,000,000	-
39	서영식	531-4	대	3249.4	30.10/3249.4	531-4	1/1	32174	태산아파트 2층 217호	0	99,000,000	99,000,000	-
40	서영애	532-28	대	159.7	1/1	532-28	1/1	12220	단독	244,607,160	203,797,190	448,404,350	-
41	서춘길	530-33	대	383.7	1/2	530-33	1/2	11924	단독	303,250,900	34,995,740	338,246,640	-
42	서희택	535-3	대	5202.1	22.644/5202.1	535-3	1/1	51857	신아아파트4동 4층406호	0	78,666,660	78,666,660	-
43	성열	533-25	대	185.7	1/1	533-25	1/1	11618	단독	271,926,700	200,138,390	472,065,090	-
44	송명숙	484-26	대	210	26.25/210	484-26	1/1	31470	하나맨션 2층202호	0	112,666,660	112,666,660	-
45	안양현	530-4	대	2879.9	15.87/2879.9	530-4	1/1	52037	상아아파트101동 14층1405호	0	94,000,000	94,000,000	-
46	양민호	535-43	대	393.5	25.75/393.5	535-43	1/1	31723	세림빌라B동 지1층B01호	0	71,666,660	71,666,660	-
47	양봉만	490-9	대	292.4	1/1	490-9	1/1	12341	단독	480,705,600	120,679,050	601,384,650	-
48	양영자	530-4	대	2879.9	15.87/2879.9	530-4	1/1	32092	상아아파트101동 9층906호	0	96,000,000	96,000,000	-
49	엄남식	492-2	대	663.3	1/1	492-2	1/1	12404	단독	1,447,320,600	863,938,910	2,311,259,510	-
50	왕용덕	488-21	대	441	23.225/441	488-21	1/1	32330	평화빌라3동 2층201호	0	81,666,660	81,666,660	-
51	유순자	531-15	대	375.6	27.54/375.6	531-15	1/1	72131	신성빌리지 3동 4층 403호	0	86,333,330	86,333,330	-
52	윤광현	491-5	대	269.7	20.70/269.70	491-5	1/1	32457	우성빌라 2층202호	0	85,333,330	85,333,330	-
53	윤영술	491-5	대	269.7	15.54/269.70	491-5	1/1	32461	우성빌라 3층303호	0	63,666,660	63,666,660	-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명단[총 83인]

연번	성명	토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지분	건물지번	건물지분	지장물	건물	토지금액	지장물금액	금액계	영업권
54	이광원	490-10	대	380.2	24.99/380.2	490-10	1/1	32359	명성빌라 나동 1층101호	0	82,333,330	82,333,330	-
55	이규익	533-1	대	2362	33.29/2362	533-1	1/1	31617	삼용아파트 A동 3층 301호	0	97,666,660	97,666,660	-
56	이근룡	486-5	대	789.3	43.8/789.3	486-5	1/1	31550	은영연립B동 3층306호	0	137,000,000	137,000,000	-
57	이금녀	485-25	대	334.2	23.41/334.2	485-25	1/1	31514	경인주택 지1층B02호	0	73,000,000	73,000,000	-
58	이길수	484-20	대	258.1	1/1	484-20	1/1	11434	단독	590,790,900	132,246,580	723,037,480	-
59	이미숙	530-1	대	440.7	27.78/440.7	530-1	1/1	31919	전인빌라 나동 3층302호	0	84,000,000	84,000,000	-
60	이복열	530-33	대	383.7	1/2	530-33	1/2	11924	단독	303,250,900	34,995,740	338,246,640	-
61	이선용	488-12	대	142.3	1/1	488-12	1/1	12308	단독	351,243,830	120,565,840	471,809,670	-
62	이애련	535-43	대	393.5	25.75/393.5	535-43	1/1	31711	세림빌라B동 1층101호	0	80,000,000	80,000,000	-
63	이인선	483-9	대	153.6	1/1	483-9	1/1	11414	단독	201,062,400	112,853,600	313,916,000	-
64	이재천	530-4	대	2879.9	15.87/2879.9	530-4	1/1	32014	상아아파트101동 2층205호	0	92,333,330	92,333,330	-
65	이정선	493-3	대	598.1	258.03/598.1	493-3	1/1	32468	1층101호	0	183,666,660	183,666,660	-
	이정선	493-3	대	598.1	-	493-3	1/1	32469	1층102호	0	183,666,660	183,666,660	-
	이정선	493-3	대	598.1	-	493-3	1/1	32470	1층103호	0	183,666,660	183,666,660	-
	이정선	493-3	대	598.1	-	493-3	1/1	32477	2층201호	0	246,333,330	246,333,330	-
	이정선	493-3	대	598.1	-	493-3	1/1	32483	지1층	0	181,000,000	181,000,000	-
66	이정순	532-6	대	198	24.78/198	532-6	1/1	32220	가정빌라 3층 301호	0	76,000,000	76,000,000	-
67	임경숙	535-3	대	5202.1	22.644/5202.1	535-3	1/1	51839	신아아파트4동 1층106호	0	78,666,660	78,666,660	-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명단[총 83인]

연번	성명	토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지분	건물지번	건물지분	지장물	건물	토지금액	지장물금액	금액계	영업권
68	임규영	534-28	대	150.3	1/1	534-28	1/1	11638	단독	210,520,200	160,864,560	371,384,760	-
69	임병선	483-6	대	160.6	1/1	483-6	1/1	11411	단독	276,660,260	142,400,370	419,060,630	-
70	임종국	485-4	대	178.5	1/1	485-4	1/1	11541	단독	441,371,000	25,243,730	466,614,730	-
	임종국	485-5	대	184.9	1/1	485-5	1/1	11541	단독	444,437,960	0	444,437,960	-
	임종국	485-6	대	168.4	1/1	485-6	1/1	11541	단독	241,485,600	0	241,485,600	-
71	장기설	490-22	대	380	24.98/380	490-22	1/1	32390	명성빌라 다동 3층302호	0	87,000,000	87,000,000	-
72	전상현	490-14	대	564.4	47/564.4	490-14	1/1	32376	은영연립 3층302호	0	142,333,330	142,333,330	-
73	정복순	532-8	대	227.5	28.5/227.5	532-8	1/1	32226	연안빌라 2층 201호	0	81,000,000	81,000,000	-
74	정진면	531-4	대	3249.4	30.10/3249.4	531-4	1/1	32155	태산아파트 1층 115호	0	96,000,000	96,000,000	-
75	조병춘	493-19	대	315.6	26.30/315.6	493-19	1/1	52431	태양빌라 3층303호	0	91,333,330	91,333,330	-
76	조영휘	485-16	대	734.1	1/1	485-16	1/1	11534	단독	협의	134,573,370	134,573,370	-
	조영휘	493-22	대	388.8	1/1	493-22	1/1	12433	단독	575,035,200	180,063,580	755,098,780	-
	조영휘	533	대	2917.6	1/1	533	1/1	11642	단독	6,970,146,400	275,059,870	7,245,206,270	-
77	조원휘	490-4	대	147.7	1/1	490-4	1/1	12337	단독	186,791,260	49,811,390	236,602,650	-
78	주성중	491-1	대	2498.4	57.27/2498.4	491-1	1/1	32421	남양연립 나동 1층103호	0	143,000,000	143,000,000	-
79	채용운	486-15	도	32.7	1/2	-	-	-	-	19,887,050	0	19,887,050	-
80	최옥순	532-33	대	539.6	32.30/539.6	532-33	1/1	32268	경인빌라 가동 2층 201호	0	105,666,660	105,666,660	-
81	최흥길	489-4	대	216.5	1/1	489-4	1/1	12316	단독	271,996,160	239,367,270	511,363,430	-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소유자 명단[총 83인]

연번	성명	토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지분	건물지번	건물지분	지장물	건물	토지금액	지장물금액	금액계	영업권
82	한정임	493-3	대	598.1	26.75/598.1	493-3	1/1	32472	1층105호	0	183,666,660	183,666,660	-
83	황진석	484-1	도	35.2	1/2	-	-	-	-	8,747,200	0	8,747,200	-
										20,661,898,020	11,659,562,650	32,321,460,670	0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관계자 명단 [총47인]

구분	관계인	관계인주소	소유자	대상물건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비고
1	(공)경기도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황진석	484-1	건설교통과
2	(공)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영근	483-15	세무2과
3	(공)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로 153 강서구청	윤광현	491-5	세무2과
4	(공)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9	강해근	532-33	교통지도과
5	(공)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	강영근	483-15	세무2과
6	(공)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	윤광현	491-5	
7	(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윤광현	491-5	세무관리과
8	(공)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31-1	박일남	486-15	세무과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31-2	채용운	486-15	세무과
9	(공)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심곡동, 244	박일남	486-15	세무과
10	(구)한미은행 (현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	김성운	530-4	부평지점
			양봉만	490-9	역곡지점
			이재천	530-4	부평지점
11	(세)강릉세무서	강원도 강릉시 교2동 산68번지	강영근	483-15	
12	(세)강서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강서세무서	윤광현	491-5	
13	(세)남인천세무서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남인천세무서	채용운	486-15	
14	(세)북인천세무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	배남섭	532-7	
15	(세)서인천세무서	인천 서구 연희동 서인천세무서	채용운	486-15	
16	(세)성동세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7-6	강영근	483-15	
17	(세)영등포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세무서	윤광현	491-5	
18	(세)인천세무서	인천 동구 창영동 인천세무서	채용운	486-15	
19	갈산,삼산동새마을금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59-5	엄남식	492-2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	인천 서구 심곡동, 247-3	배남섭	532-7	
			이금녀	485-25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3-1 새터빌딩 3층	채용운	486-15	
22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채용운	486-15	
23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5-4	이규익	533-1	
24	김정규	인천 서구 가정동 530-31 신아빌라 101호	권옥자	530-31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관계자 명단 [총47인]

구분	관계인	관계인주소	소유자	대상물건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비고
25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강세환	531-14	
			김정남	530-20	용현지소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임규영	534-28	인천가좌지점
27	대성신용협동조합	인천 동구 만석동 72-11	이정순	532-6	
28	대한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조규연	493-11	인천지역본부
2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양민호	535-43	경인신용지원단
30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고형원	485-3	
			김란숙	484	남부지점
			김삼임	484	
			김재석	531-4	연희지점
			이길수	484-20	
			이정선	493-3	연희지소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연희지소	조규연	493-11	
31	원진약품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강해근	532-33	
32	이형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155(4)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103동603호	강병철	491-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LG3차빌리지302-1501(-시스템주소)			
33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77-5	송명숙	484-26	계산동지점
34	임희정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신흥아이파크 105-601	전상현	490-14	
35	조순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149-45	윤영술	491-5	
36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안지점	권옥자	530-31	주안지점
37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구병옥	489-1	과천지점
38	주식회사 한빛은행(현,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구병옥	489-1	인천남지점
39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서영식	531-4	송현동지점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관계자 명단 [총47인]

구분	관계인	관계인주소	소유자	대상물건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비고
40	주식회사조흥은행 (현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강기정	533-4	부천중동지점
41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서희택	535-3	삼산동지점
			안양현	530-4	중동지점
42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강해근	532-33	석암지점
			김선국	535-25	부평지점
			양민호	535-43	가정동지점
43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김도원	488-15	서인천지점
44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채용운	486-15	
45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양영자	530-4	
46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강병철	491-1	주택부평영업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강세환	531-14	인천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고정애	490-10	주택서인천지점
			김명순	530-1	구월남지점
			김종태	486-3	주택신현동지점
			김창식	535-43	개봉남지점
			박춘택	485-8	인천영업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박현동	532-2	신현동지점
			왕용덕	488-21	만수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윤광현	491-5	용현동지점
			윤광현	491-5	인천여신관리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윤영술	491-5	용현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이금녀	485-25	신현동지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이미숙	530-1	작전동지점
			임경숙	535-3	주안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임종국	485-4	가산테크노타운지점		
		485-5			
		485-6			

■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제5차 수용재결신청 관계자 명단 [총47인]

구분	관계인	관계인주소	소유자	대상물건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비고
			전상현	490-14	주택신현동지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정진면	531-4	구월동지점
			조병춘	493-19	용현동지점
47	현대택배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양민호	535-4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30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공인모서리 훼손으로 인한 개각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09년 06월 01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조 공인인영

신조 공인명	규격(cm)	신조 공인인영	비 고
가좌2동장인/민원 전용	2.1cmx2.1cm ²		공인 모서리 훼손으로 인한 개각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3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2009. 5.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9년 1월 1일 기준
- 필 지 수 : 65,057필지
- ※ 결정내역 : 토지지번별 ㎡당 가격(개별통보)
-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신 청 기 간 : 2009. 6. 1 ~ 6. 30(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결정·공고한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 : 2009. 7. 1 ~ 7. 30(30일간)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638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09. 0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가.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나. 도로지정 내역

도로지정 위치	건축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도로지정 및 규모	비고
인천서구 금곡동 산49-5번지	윤 경 숙	금곡동 산49-5번지 현행도로 부분	도로너비:4.5m 도로길이:7.5m 도로면적: 35.0㎡	

다. 공고 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관할 동사무소 게시

라. 도면 열람 :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32)에 비치